



그룹홈의 정체성에 비추어본 현황과 발전방향

— 향후 5년 동안의 10대 과제

1. 본 연구는, 2017년 9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의 연구 제안을 받아 협의회 내 미래포럼 2기에서 작성하여 제출함.
2. 향후 5년 동안의 (2017년 ~ 2022년) 그룹홈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 적으로 작성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그룹홈의 정의 및 정체성

1. 역사적 정체성
2. 사회적 정체성
3. 법적 근거
4. 소결 ; 그룹홈의 정의



그룹홈의 현황과 발전방향

1. 인적 환경
2. 주택 환경
3. 행정과 재정 환경
4. 아동의 자립 환경



그룹홈의 나아갈 길



그룹홈의 정의 및 정체성

1

1. 역사적 정체성
2. 사회적 정체성
3. 법적 근거
4. 소결 ; 그룹홈의 정의

역사적 정체성

| | |
|-------------|---|
| 1987년~1994년 | <p>1987년에 설립된 은총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첫 시발 - 서울 보문동에서 시작한 은총의집은 마을 속에서 가정집에 명패 없이 기거하며, 아동 7명 선에서 어른 두 명이 함께 생활하고, 아동이 많아지면 시설을 확장하지 않고 분가를 통해 작은 가정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시작한 첫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할 수 있음. |
| 1997년 | 공동생활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함. |
| 2004년 | 아동복지법개정(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음. |
| 2005년 | 공동생활가정을 신고시설로 전환시키고 1,281,000원의 1인 인건비와 시설 당 월 192,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함. |
| 2007년 | 시설 당 2인 인건비를 지원하기 시작함. |
| 2011년 |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종사자 자격강화, 시설규모나 운영관련 지침이 강화 됨. |
| 2017년 | 2~3인의 인건비와 월 280,000원의 운영비 지원 |

사회적 정체성

□ 연도별 아동양육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

(단위:개소명)

| 년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시설수 | 239 | 242 | 243 | 243 | 242 | 239 | 238 | 242 | 243 | 243 | 242 |
| 입소자 | 3,507 | 2,892 | 2,734 | 2,273 | 2,151 | 1,914 | 1,983 | 2,015 | 1,996 | 1,703 | 과잉중 |
| 퇴소자 | 3,270 | 2,838 | 2,949 | 2,629 | 2,606 | 2,409 | 2,435 | 2,489 | 2,609 | 2,334 | 과잉중 |
| 아동수 | 17,675 | 17,729 | 17,517 | 17,161 | 16,706 | 16,239 | 15,787 | 15,313 | 14,700 | 14,038 | 13,437 |
| 전년대비 증·감(▽) | 54 | ▽212 | ▽356 | ▽455 | ▽467 | ▽452 | ▽474 | ▽613 | ▽662 | ▽601 | |

□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현황

(단위:개소명)

| 년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시설수 | 348 | 397 | 416 | 460 | 489 | 480 | 476 |
| 아동수 | 1,664 | 1,993 | 2,127 | 2,241 | 2,438 | 2,481 | 2,588 |
| 전년대비 증·감(▽) | 329 | 134 | 114 | 197 | 43 | 10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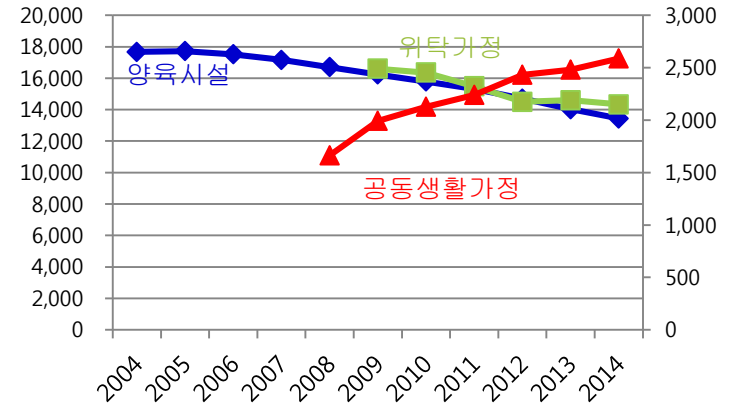
□ 가정위탁 보호아동 현황

(단위:개소명)

| 년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사자수 | 12,170 | 12,120 | 11,630 | 11,030 | 11,169 | 11,043 |
| 아동수 | 16,608 | 16,359 | 15,486 | 14,502 | 14,596 | 14,340 |
| 전년대비 증·감(▽) | ▽249 | ▽873 | ▽984 | 94 | ▽256 | |

<한국아동복지협회 통계자료>

<연도별 아동수 추이>



- 통계 조사 시작 해를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수는 **-24%**, 위탁가정은 **-13.7%** 감소한 반면 그룹홈은 **55.5%** 증가 하였음.

- 단순 통계상으로도 대안양육방식은 그룹홈이 담당하는 비중이 커짐.

1. 양육시설과 그룹홈 - 탈 시설화에 따른 가정형 보호

- ①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보호에서 지역사회 속으로 편입 보호
(낙인과 소외효과 없이 사회 및 학교생활에 진입가능)
- ② 대규모 인원 수용에서 소규모 개별관리로의 전환
- ③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상 라포형성에 용의

2. 위탁가정과 그룹홈 - 전문성의 보장

- ① 201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가정 위탁 중 친인척 양육이 94% 이상을 차지함
- ② 가정위탁은 한국적 정서에 적합한 모델이라 할수 있으나,
아동의 양육 상태 점검이나 투명성 등에서 한계점이 있을 수 있음.
- ③ 요보호 아동의 경우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나,
대리양육의 경우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없어 한계점으로 지적됨.

시설화 탈피 / 가정형 보호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운영의 투명성 확보

1. 아동권리협약 제 2차 보고서 (UN 아동 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족과 분리된 어린이를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그룹홈을 설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룹홈과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설양육기관이 정부 규제나 정기적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2. 아동복지법 제 52조 4항 (법제처)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2015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정부 합동 부처)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생활시설 등 일시보호 성격의 아동보호 제도간 특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간 협업구조 마련, 특히,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아동생활시설은 지역 내 아동보호 거점센터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그룹홈의 정의

그룹홈은,

요보호아동의 **개별 양육** 서비스에 중점을 둔

탈시설의 가정형 보호제도이다.



그룹홈의 현황과 발전방향

2

1. 인적 환경
2. 주택 환경
3. 행정과 재정 환경
4. 아동의 자립 환경

1. 그룹홈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절실함.

- ① 그룹홈은 탈시설화라는 명분으로 제도화 되었으나 행정일선에서는 여전히 양육시설과 같이 분류하고 같은 기준으로 현장을 지도, 관리감독하고 있음. 이에 **형식과 내용의 부조화**로 인하여 각종 현안문제가 대두됨.
- ② 이는 그룹홈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형양육시설과 동일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룹홈 종사자를 일반 행정가로 바라보고 있는 지자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그러나, 그룹홈은 아동 개별의 특성에 맞는 양육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에, 종사자를 행정가이기 보다는 **양육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더 절실히 요구됨.

< 예시 >

| | | 분야별 안전점검 | | |
|----------------|--|---|------|------|
| 분야 | 점검 항목 | 점검결과 | | |
| 소화 안전 관리 | 소화 기 및 소화 설비 | 규정에 따라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의 압력지침은 녹색에 있으며 내부 분말이 굳어있지 않는가? | 결과 | 양호 |
| | | | 조치사항 | |
| | | 소방관련법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소프림블러설비 등 강령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결과 | 해당없음 |
| | | | 조치사항 | |
| | | 소화전함 내에 호스와 관형의 상태가 양호한가? | 결과 | 해당없음 |
| | 조치사항 | | | |
| | 소화전 주변 장애물로 사용상 방해가 발생하지는 않은가? | 결과 | 해당없음 | |
| | 조치사항 | | | |
| | 스프링클러 헤드가 미설치된 부분이 있거나 살수반경 내에 장애물은 없는가? | 결과 | 해당없음 | |
| | 조치사항 | | | |

- 왼쪽의 예시와 같이 관리 항목 체크리스트가 양육시설기준으로 되어있어 그룹홈의 경우 ‘해당 없음’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그룹홈 종사자는 행정가나 운영자에 앞서 무엇보다 **아동의 양육자**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2. 그룹홈 종사자의 인력배치와 처우개선

① 근무 현황

- 현재 그룹홈은 1명의 시설장과 2명의 생활지도원이 배치
- 기계적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3인으로 나누더라도 1인당 근무시간은 주 56시간
- 그러나 그룹홈 특성상 2사람이 함께 근무하는 지금의 근무형태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약 주 70~80시간 근무

② 주 70~80시간을 근무함에도 시간외 수당 지급이 되지 않음.

③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10년을 근무한 종사자와 1년을 근무한 종사자의 급여가 동일

그룹홈의 인력배치는 최소 4인 체제까지 확보되어야 하며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3. 그룹홈 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

① 현 그룹홈 종사자의 자격

시설장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취득 이후 아동복지시설 경력 3년 이상

종사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이상

② 주 업무인 양육기술, 아동이 갖는 특이성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 필요**

(ex : 그룹홈은 원칙적으로 장애아동을 입소시키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양육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 장애아동의 양육 시 그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필요함.)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교육의 질적 양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1. 그룹홈 주택공급의 공공성

- 아동복지법 제 1조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복지법 제 3조 2항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① 국가의 보호의무아동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은 국가의 책임인가? 민간의 책임인가?

- 현재 그룹홈 주택의 최종 부담은 **민간**에서 지고 있음.
- 10여년 전 그룹홈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당시 국가적 지원이 인력배치 1명 등으로 열악하였기 때문에 각 그룹홈들은 가족을 동원하여 공동체를 이룬 예가 적지 않음.
- 당시부터 주택은 당연히 종사자의 부담이었음.

② 2018년 8월까지 종사자의 가족들을 그룹홈 밖으로 이주할 것을 지침으로 정함.

- 종사자 가족 분리원칙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그 원칙에 동의하고 따를 수 있으나, **그룹홈의 주택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음.

2. 그룹홈 주택 공공성의 확보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주택공급

< 현재 LH는 전세매입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에 그룹홈을 포함 >

- ① 절차나 규제마련이 그룹홈과 맞지 않아 수혜를 받지 못함.
- ② 그룹홈의 주택 수요 및 신청은 지자체가 맞고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부족으로 신청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 ③ 도서, 산간 지역에는 LH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필요한 곳에서는 지원불가
- ④ 전세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더라도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2년에 한번씩 이사
- ⑤ 전세매입임대의 경우 주택면적을 $85m^2$ (33평)이하로 한정
아동 정원 5~7명 상시 거주 종사자 1~2명임을 고려하면 6~9명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무척 협소
- ⑥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그룹홈에 맞는 평수를 매입하고 있지 않음.

LH의 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의 세부지침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3. 주거비 지원

- ① 그룹홈 아동은 일반 수급자로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음.
- ② 수급비는 생계비와 주거지원비로 나누어 지며, 여러 절차를 거쳐 아동 1인당 99,150원 정도의 주거 급여비가 지원 가능
- ③ 일부 지자체의 경우(충남 일부, 경기도 일부, 전남 일부) 그룹홈이 운영비 280,000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거 급여비를 지원하지 않음.
- ④ 이에 시설장 사비와 후원금으로 주거비를 해결하고 있으나 그룹홈 운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연합뉴스 2017년 8월 9일 - 권익위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해야” 기사 중 발췌

공동생활가정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

현재 법인 운영 시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으나, 개인운영 시설은 입주자격이 없어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낸다.

예컨대 법인이 운영하는 A공동생활가정은 방 3개짜리 임대주택(70.4m²)을 보증금 571만원, 월 13만 8천원에 이용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B공동생활가정은 방 3개짜리 임대주택(85.8m²)을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에 이용하고 있다.

그룹홈의 주거지원비 지급

재정환경

- 그룹홈의 보조금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달 운영비가 280,000원**임.

<표 V-41> 공동생활가정 공동경비

(단위: 만원)

| 아동 1인당 지출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월별 인건비 | 34 | 59.98 | 23.81 |
| 교양오락비 | 28 | 2.63 | 4.44 |
| 식비 | 35 | 19.83 | 14.88 |
| 공공요금 | 35 | 8.89 | 10.29 |
| 공공집기 | 32 | 7.08 | 11.83 |
| 단체프로그램비 | 35 | 7.58 | 9.78 |
| 보험료 | 35 | 2.17 | 4.55 |

- 위의 연구(우석진외, '대안양육제도 양육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아동 1인당 공공지출은 159,700원**이며, 그룹홈 당 거주아동 평균 5.4명으로 계산하면 **한 그룹홈 당 공공요금 지출은 862,380원**임 .
최소한 현실에 근접한 운영비 지원이 시급

현실에 맞는 운영비 지급이 시급

- 그룹홈 대부분의 행정양식은 대규모시설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가정형 그룹홈의 실정에 맞지 않음.
- 특히, 30명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맞추어진 행정양식을 따르다 보니 실제 업무 이상의 행정 절차와 서식을 요구받고 있음. 이에 그룹홈 본연의 업무인 아동 개별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① 간소화

- 가정형 복지 모형에 적합한 행정으로 개선되어야 함.

② 표준화

- 복지부에서 발간한 그룹홈 매뉴얼이 존재하나, 일반 행정 양식의 모음에 불과하여 표준화된 매뉴얼로 볼 수 없음.

③ 일원화

- 행정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하여 지자체 마다, 혹은 담당 주무관이 교체될 때마다 요구되는 서식과 절차가 모두 달라 현장에서 자주 혼선이 발생함.
- 이에 전국 그룹홈들의 행정수준의 낙차가 큼.
- 일원화된 행정서식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그룹홈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에 따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룹홈 전체의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음.

- 그룹홈의 행정은 소규모 가정형에 맞게 간소화, 표준화, 일원화 되어야 한다.
- 그룹홈에 맞는 표준매뉴얼을 연구, 배포하여야 한다.
- 그룹홈 표준 매뉴얼은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로 전달하여,
전국 그룹홈의 행정절차가 동일화 되어야 한다.
- 행정과 재정환경의 정상화, 데이터 구축,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하는 중앙지원단의 설립이 시급하다.

<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 >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3.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4.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5.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할 것

- 아동보호 서비스의 범위가 아동에서 **원가족까지 확대**되었으며, 사후 관리가 아닌,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원가족의 회복은 요보호 아동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의미의 자립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현 상황은 회복의 과정 없이 원가족 복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아동이 원가족 복귀 후 다시 재 입소 하는 경우가 많음.
- 원가족 복귀는 부모의 준비 및 원가족 회복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아동의 자립환경

① 그룹홈 아동의 자립

- 지자체 보조의 자립정착금과 CDA 디딤씨앗 통장의 자금으로 자립
- LH의 주거 지원 및 생활용품 구비 지원

② 아동의 진로와 일자리

- 그룹홈의 최종, 최고의 목표는 아동의 자립이나, 대개의 업무는 성장과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그룹홈에서 취업까지 책임지기에는 전문성이나, 제반 여건상 분명한 한계가 존재

- 최근 국가에서는 자립훈련, 취업, 자립 이후의 생활을 돕는 시스템 개발로 자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그룹홈은 제외되어 있다.
- 그룹홈 아동들도 자립하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숙련된 자립전담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그룹홈의 나아갈 길 3

-향후 5년 동안의 10대 과제

향후 5년의 10대 과제

1. 가정형 모델에 맞는 그룹홈만의 독립된 관리체계 마련
2. 운영비의 현실화
3. 그룹홈에 적합한 행정의 간소화, 표준화, 일원화
4. 중앙 지원단의 설립
5.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6. 2-3교대가 가능한 4인 이상의 인력배치
7. 그룹홈의 주거를 민간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
8. 아동의 원가족 회복 이후의 복귀
9. 자립전담요원 배치
10. 그룹홈 체계를 시행령및 시행규칙등 법의 형태로 반영